

(사)대한산란계협회	<b>보 도 자 료</b>	번창하는 산란산업 활기찬 농장 만족하는 소비자
------------	----------------	---------------------------------

보도 시점 : 2026. 5. 18.

담당 부서	(사)대한산란계협회 사무국	책임자	회 장 안두영(010-3723-1332)
		담당자	전 무 김경두(010-3722-2822)

## 공정위, 계란 판매원가 축소하여 생산자 폭리 몰아... 파문

- 대한산란계협회, 공정위 제재에 억울함 호소 -
- 술(부당이득) 안 먹었는데 음주운전(담합)이라고? -

(사)대한산란계협회(이하 “협회”)는 18일 ‘협회의 계란가격정보(공정위는 이를 “기준가격”이라고 명명) 제공’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처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협회가 회원 등에게 제공한 ‘기준가격’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지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가 협회의 정보제공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 ① 협회의 기준가격이 구성사업자들의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협회가 제공한 정보가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이 조사한 산지 실거래가격 패턴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그 증거이다.
- ② 협회가 기준가격을 높여서 도·소매 가격의 연쇄적인 상승을 초래했다.  
 위반기간(2023.~2025.) 중 2023년 대비 2025년의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발표에서는 담합의 실질적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 부당이득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기준가격을 획일적으로 적용(담합)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가의 실제 수취금액 및 도소매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협회는 공정위 발표결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① 계란가격은 수급과 외부변수에 영향을 받으며, 기준가격은 이를 알려주는 정보일 뿐이다.

계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무수히 많다. 계란은 수요와 공급 균형, 수많은 외부변수(질병, 기후, 수입량, 국제 시세, 사료값, 정부의 정책, 다른 농축산물의 가격,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통계,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수급전망, 각종 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현재 계란가격은 협회가 기준가격 제시를 중단한지 1년이 되었음에도 역대 최고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외부변수(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살처분량, 질병 발생에 따른 산란율 저하, 정부의 사육기준 확대정책 등) 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런 외부변수가 아닌 기준가격만이 영향을 주었다면 기준가격이 일관되게 선행해야 하고, 항상 높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정위가 제시한 그래프에는 기준가격이 산지가격을 일관되게 선행하거나 높은 모습을 볼 수 없다. 답합이라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하는 정보가 산지 실거래가격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면, 이와 같은 모든 외부변수와 인과관계 등을 포함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지 주관적 추정이나 판단만으로 판결하는 것은 증거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② 위법의 기준으로 삼은 축평원의 조사값은 참값이 아니다.

축평원이 발표하는 계란가격은 일반 국민이 축평원 가격정보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입력하면, 축평원은 이 입력치를 계산하여 발표한다.

축평원이 계란가격을 조사하는 근거법령은 없고(현재는 계란과 무관한 축산계열화사업법에 따라 조사), 통계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받은 통계도 아니고, 정보의 신뢰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참여인원이나 신뢰도 등도 발표하지 않는다. 즉 두 가격의 유사한 것이 왜 답합의 증거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부 공표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내부 참고용 수준의 정보'를 참값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협회는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축평원이 조사한 실거래 가격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가격을 입력하기 위해 가입한 회원수, 일자별 입력인원, 회원별 사육방식, 인증이나 등급 등 회원별 특성, 신뢰도 등) 등의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③ 선별포장까지 하여 판매하는 계란을 원란으로 파는 것으로 하여 왜곡된 마진 산출

공정위는 ‘협회의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격차는 계란농가의 마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격차가 담합 기간인 2023년 781원에서 2025년에는 1,440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것은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허위이다.

첫째, 마진을 계산 오류 및 폭리의 기준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도 53개 주요 농축산물의 평균 마진율(수익율 또는 소득율)은 45.3%이다. 공정위의 발표를 인정한다면 계란의 마진율은 27.2%로서(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4년 수익률은 17%), 타 품목의 마진율에 비해 18.1%나 낮다.

계란의 마진율이 높아서 소비자가격을 인상하였다면, 또한 그것이 위법(시정 및 과징금 처분)이라면,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이보다 높기 때문에 농업인 대부분은 부당한 이익을 올리는 집단이 된다.

둘째, 생산자 폭리 물이를 위한 통계 왜곡

공정위는 협회가 설립된 이후에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격차가 커졌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설립된 이후 3년(2023.~2025.) 평균(1,084원) 보다 설립 이전 3년(2020.~2022.) 평균(1,649원)이 오히려 격차가 크다.

<표 1> 협회 기준가격과 원란 생산비 비교표(붉은 선 안은 공정위가 발췌한 부분)

(단위 : 원/ 30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협회 기준가격(A)	4,830	4,230	5,040	3,090	3,450	4,170	5,223	5,580	4,841	4,887	5,296
원란 생산비(B)	3,153	2,919	3,351	2,814	2,868	2,847	3,249	3,930	4,060	3,856	3,856
차이(A-B)	<b>1,677</b>	1,311	1,689	276	582	<b>1,323</b>	<b>1,974</b>	<b>1,650</b>	<b>781</b>	<b>1,031</b>	<b>1,440</b>

\* 2025년은 협회가 가격고시를 중단한 일자(공정위 조사가 개시한 일자)까지 적용하면, 고시가격 평균은 5,094원

특히 10년 전(2015년) 대비 생산비용은 22.3%나 상승하였음에도 협회의 기준가격이 9.6% 상승에 그친 것은 생산자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축소했음을 보여 준다.

해당 자료를 공정위 심사관에게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그 중의 일부 통계를 발췌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셋째, 판매원가를 축소하여 계란 생산자를 폭리집단으로 매도

마진의 뜻은 '판매 가격에서 매출 원가를 제한 차액'을 말한다.

그런데 생산자는 계란을 원란(닭이 알을 낳은 상태) 상태로는 판매할 수 없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계란은 선별, 세척, 살균, 포장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란 생산자의 대부분(100% 가까이)은 닭이 알을 낳으면 원란(原卵, 손을 대지 않은 알) 상태의 알(계란)을 주로 아래 그림1과 같은 선별포장 과정을 거쳐서 유통인(수집판매업자), 소매점, 가공업체, 직거래 등으로 판매한다.

<그림1> 계란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되기까지의 단계



협회 기준가격은 생산자가 유통인 등에게 판매하는 단계 중 출하 단계(14번)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생산자는 이를 참고하여 판매가격을 흥정하고 있다.

생산자는 대체로 상차(출하) 단계까지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운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생산자도 있으며, 특별한 포장을 주문하는 경우 유통인이 추가 포장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그런데, 공정위는 생산자가 원란 상태(그림의 2번)로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나머지 부분의 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원란 생산원가와 기준가격과 직접 비교함으로써 마진률이 높은 것으로 왜곡하였다.

또한, 원란 상태까지의 비용은 개당 128.5원이지만, 상차(운송)까지의 비용은 182원으로서, 협회가 제공하는 기준가격은 아래 표2처럼 판매원가 보다 낮다.

협회 설립 이전 3년은 30개 한판당 약 490원의 흑자 수준이지만, 협회가 설립된 해부터 3년간은 480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원란 생산원가와 기준가격의 차이는 공정위 판단과 반대이다.

<표 2> 계란 판매원가와 산란계협회 기준가격 비교

(단위 : 원/30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협회 기준가격(A)	4,830	4,230	5,040	3,090	3,450	4,170	5,223	5,580	4,841	4,887	5,296
판매원가(B)	자료없음	자료없음	4575	3,915	3,894	3,837	4,353	5,313	5,544	5,460	5,460
차이(A-B)	-	-	465	-825	-444	333	870	267	-703	-573	-164

아울러, 공정위는 판매원가는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특정 시기 줄어든 원란 생산원가만을 발취하여 생산비용이 낮아졌다고 왜곡하였다.

<그림 2> 계란 판매원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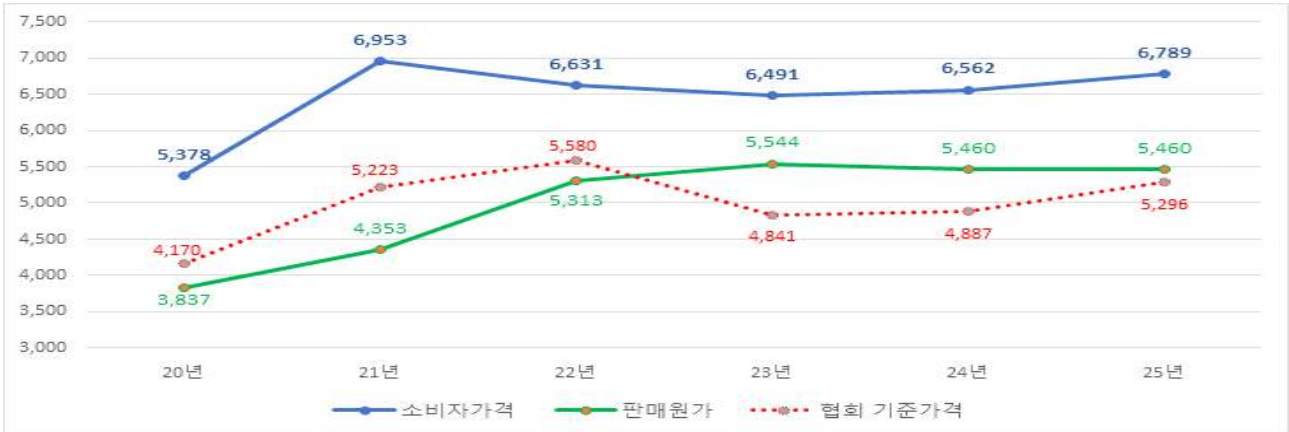


즉, 공정위 주장대로 협회의 정보가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가격이고, 이를 담합이라고 한다면, 협회는 설립하면서부터 생산자에게 “밀지고 팔자”고 담합한 셈이 된다.

또한, 생산자는 본인이 생산하는 계란을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인증(유기인증,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등), 등급(1+, 1, 2등급, 미등급), 사육방식(방사, 평사, 0.075케이지, 0.05케이지), 브랜드화 등 차별화를 위하여 노력하는데 공정위 판단대로 협회가 기준가격을 적용토록 강제한다면 이는 농가별 차별성이나 우수성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담합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협회의 기준가격이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나, 소비자가격은 기본적으로 수급상황과 외부변수(질병, 기후, 규제, 수입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이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아래 그림 3 처럼 기준가격 보다는 판매원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소비자가격, 판매원가, 협회 기준가격 비교



\* 출처 : (소비자가격) 측정원, (판매원가) 통계청, 측정원, (협회 기준가격) 공정위 설명자료

또한, 협회 설립 이후에는 공정위의 판단과는 반대로 오히려 협회 기준가격이 판매원가보다 낮아졌는데 이를 담합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논리 모순이자 사실 왜곡이다.

협회는 공정위의 심의결과가 도달하면 이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끝.

<참고> 관련 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한다.

2.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